

대전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4가단220916 판결 [건물명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마음

담당변호사 이호은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1. 27.

판결 선고2024. 12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㎡를 인도하고,

나. 220,000원 및 2024. 12. 20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39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1) 부분 165㎡를 인도하고, 미지급 월차임 220,000원 및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24. 12. 20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39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윤종섭

별지

1) 별지 도면 참조